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27

제출년월일 : 1997. 6. 12.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고성군 공설시장 중 재개발한 현대화 시장에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○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6조제1항을 재개발 이전의 기존 시장과 재개발 이후 현대화된 시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정함(안 제6조제1항. 별표1. 별표2)

3. 주요골자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재개발 이전의 기존 시장은 "별표 1"의 기준에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, 재개발 이후 현대화된 시장에 대하여는 "별표 2"의 시용료 기준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(별표 1) 재개발 이전의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

요율구분			기준	요액 (단위 : 원)			비고
				1 급지	2 급지	3 급지	
상설시장	점포	1 등지	3.3025㎡당 월	980	840	700	1급지 : 시장명
		2 등지	"	560	420	280	회화면 배둔시장
		3 등지	"	250	140	90	
	장옥	1 등지	3.3025㎡당 월	700	560	420	
		2 등지	"	340	280	230	
		3 등지	"	140	90	60	
	노점	1 등지	3.3025㎡당 월 3.3025㎡당 매시일	420 30	340 30	280 10	2급지 : 시장명
		2 등지	3.3025㎡당 월 3.3025㎡당 매시일	230 20	170 20	120 10	거류면 당동시장
		3 등지	3.3025㎡당 월 3.3025㎡당 매시일	140 10	112 10	84 10	
정기시장	장옥	1 등지	3.3025㎡당 종일 3.3025㎡당 일시	120 60	100 60	90 40	3급지 : 시장명
		2 등지	3.3025㎡당 종일 3.3025㎡당 일시	70 40	60 30	50 20	그외 이상 시장
		3 등지	3.3025㎡당 종일 3.3025㎡당 일시	50 30	40 20	30 10	
	노점	1 등지	3.3025㎡당 평일 3.3025㎡당 일시	70 40	60 30	50 20	
		2 등지	3.3025㎡당 평일 3.3025㎡당 일시	20 10	20 10	20 10	
		3 등지	3.3025㎡당 평일 3.3025㎡당 일시	20 10	20 10	20 10	
시한 및 노점시장	시한	화물자동차	매시일 대당	170	120	90	
		손수레	매시일 대당	30	20	20	
	노상	화물자동차	매시일 대당	170	120	90	
		손수레	매시일 대당	30	20	20	

※ 정기시장의 종일과 일시의 구분은 3시간 이상 사용을 종일로 간주한다

(별표 2) 재개발 이후의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기준

구 분		기 준	비 고
점포배정	배정순위	○ 1 순위 : 재 건축전의 영업자 ○ 2 순위 :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노점상 및 기타 ※ 업종별 점포배치계획에의거 배정하며, 과다 신청시는 공개 추첨	
	유의사항	○ 1인은 1점포 사용할 수 있으며, 부득이 할 경우 시장 여건에 맞게 가감할 수 있다 ○ 시장 점포는 타용도 사용 불가함	
점포사용료	근 . 거	○ 사용료 산출 적용 기준 .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- 제12조(사용허가 기간) - 제13조(사용허가 조건) - 제2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 - 제24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	※ 노점상은 "별표 1" 의 기준적용 (정기시장 1등지2급지 적용)
	사용료 징 수	○ 사용기간 : 매년 재계약 또는 3년으로 한다 ○ 징 수 :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5조에 의함 . 영오공설시장 사용료 - 년 사용료 : 10㎡당 112,700원	
시 장 관 리		○ 시장 관리는 시장 번영회에서 운영 ○ 노점상 사용료는 시장 번영회 자금으로 운영 ○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제공과금과 간단한 수선비는 시장 번영회에서 부담한다	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 (사용료)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지의 기준에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	제6조 (사용료)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재개발 이전의 기존 시장은 "별표 1"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, 재개발 이후 현대화된 시장에 대해서는 "별표 2"의 사용료 기준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